

스마트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규정

제정	2016.03.01.
개정	2017.03.01
개정	2018.05.01
개정	2018.12.24
개정	2020.05.25
개정	2021.01.18
개정	2022.02.21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) 학칙 제55조에 의거 본교의 스마트교수학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본교의 교육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① 교수지원업무

1. 교수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등 조사 연구
2. 교수자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, 운영, 평가 지원
3. 교수자 수업 질 관리를 위한 운영 지원
4. 교수지원 운영 사업성과 분석, 환류 체계구축 및 실행
5. 기타 교수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사항

② 학습지원업무

1.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등 조사 연구
2. 학생의 (전공)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, 운영, 평가 지원
3. 학생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, 운영, 평가 지원
4. 학생의 학습 이력 관리·지원
5. 대학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진단지 개발 및 수정, 진단 및 평가결과분석, 진단 결과에 따른 비교과프로그램 운영, 환류
6. 학습지원 운영 사업성과 분석, 환류 체계구축 및 실행
7. 기타 학습지원에 대한 사항

③ 원격교육지원업무

1. 원격교육(스마트러닝) 환경 구축 및 지원
2. 원격교육 우수 콘텐츠 개발, 제작지원, 운영 지원
3. 원격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관리, 평가, 운영 지원
4. 원격교수학습 모델 연구 개발, 운영 지원

5. 원격교육 운영사업 성과분석, 환류 체계구축 및 실행

6. 기타 원격교육지원에 대한 사항

④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

⑤ 수업평가 업무

1. 수업평가 문항 관리

2. 수업평가 실시

3. 수업평가 운영 성과 분석, 환류 체계구축 및 실행

4 기타 수업평가 업무에 대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본 센터는 센터장과, 소속 교수,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회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

제5조(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)

① 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회는 스마트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14인 이내로 구성하되,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, 위원장은 회의의 위원장이 된다.

④ 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.

1. 센터에서 지원하는 교수지원,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
2. 센터의 교수지원,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

3. 교수지원, 학습지원프로그램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
4. 기타 교수지원, 학습지원 프로그램 관한 사항

제6조(원격수업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)

①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원격수업 운영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구성 및 활동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